
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839호 2023. 6. 15.(목)

## 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2023-858호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... 1
- 사천시 공고 제2023-866호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..... 9
- 사천시 공고 제2023-868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... 18
- 사천시 공고 제2023-869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... 27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9호

사천시 공고 제2023-858호

「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3년 6월 15일

사 천 시 장

##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회의 미개최 또는 실적저조 위원회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비상설화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나. 협의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 임기·해촉 규정 삭제(안 제11조 및 12조)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9호

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 : 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>행정 정보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 4. 보내실 곳 : 사천시장(참조 : 행정과장)

(우편번호 : 52539, 주소 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 : 831- 2565, FAX : 831- 6021)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9호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생 년 월 일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9호

##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3 - 제 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6. .

제 출 자: 행정과장

### 1. 의결주문

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개정이유

회의 미개최 또는 실적저조 위원회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가.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비상설화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나. 협의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 임기·해촉 규정 삭제(안 제11조 및 12조)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9호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공보감사담당관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2) 입법예고

가) 기 간: 2023. 6. . ~ 2023. 6. .(20일)

나) 제출의견: 없음, 건

다) 반영여부: 반영 건, 미반영 건

3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: 반영, 미반영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9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위원장 및”을 “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및”으로,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고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호선한다”를 “호선(互選)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협의회 구성) ① <u>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,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6조(위원장의 선출과 임무) ① <u>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8조(회의) ① <u>협회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</u></p> <p>② <u>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</u></p> <p>③ <u>협회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9조(실무협의회) ① ~ ③ (생략)</p>	<p>제4조(협의회 구성) ① ----- <u>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및 ----- 구성하고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위원장의 선출과 임무) ① ----- <u>호선(互選)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회의) 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 . &lt;단서 삭제&gt;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실무협의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

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,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한다.

<삭 제>

제11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채움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<삭 제>

② 각 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③ 위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·단체의 장은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<삭 제>

1.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,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9호

사천시 공고 제2023-866호

「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15일

사 천 시 장

##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중의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「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규칙」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규정이 불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규칙을 운영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○ 거주요건 완화(안 제2조)

- 1년 6개월 → 신규: 1년 6개월(유지)

→ 양수, 상속, 대리운전: 6개월(완화)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9호

## ○ 관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추가(안 제2조)

- 신규: 1년 6개월
- 양수, 상속, 대리운전: 6개월

## ○ 구비서류 등의 조문 삭제(안 제13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 : 교통행정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[www.sacheon.go.kr](http://www.sacheon.go.kr)의 정보공개/민원>행정정보 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# 4. 보내실 곳 : 사천시장(참조 : 교통행정과)

- 우편번호 : 52539, 주소 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- 전화 : 831- 3363, FAX : 831- 6049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9호

##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

자치법규명 :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:

○ 생 년 월 일:

○ 전 화 번 호:

규칙안 내용	의견	비고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9호

##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 번호	2023 - 제 호
-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 연월일 2023. 6. .  
제 출 자 교통행정과장

### 1. 의결주문

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개정이유

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중의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「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」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규정이 불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규칙을 운영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거주요건 완화(안 제2조)

○ 1년 6개월 → 신규: 1년 6개월(유지)

→ 양수, 상속, 대리운전: 6개월(완화)

나. 구비서류 등의 조문 삭제(안 제13조)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9호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공보감사담당관

라. 기 타

1)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
2) 입법예고

가) 기 간 : 2023. 6. 15. ~ 7. 5. (20일)

나) 제출의견 : 없음, 건

다) 반영여부 : 반영 건, 미반영 건

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 : 반영, 미반영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9호

사천시 규칙 제 호

##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(이하 “면허”라 한다)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1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사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
2. 시 관내 운수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② 면허를 양수·상속받거나 대리운전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양도·양수, 상속, 대리운전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
2. 시 관내 운수업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

제13조를 삭제한다.

별표 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조 (거주요건) <u>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(이하“면허”라 한다)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년 6개월 이상 계속 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. 다만,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 운전경력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	<p>제2조 (거주요건) ① <u>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(이하 “면허”라 한다)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1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사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</u></li> <li>2. <u>시 관내 운수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</u></li> </ol> <p>② <u>면허를 양수·상속받거나 대리운전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양도·양수, 상속, 대리운전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</u></li> <li>2. <u>시 관내 운수업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</u></li> </ol> <p><u>&lt;삭   제&gt;</u></p>
<p>제13조 (구비서류 및 접수처리기한)</p>	<p><u>&lt;삭   제&gt;</u></p>



①개인택시면허 발급 희망자는 별 표 2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②개인택시면허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원사무처리기간보다 기한을 연장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만료일 이후 우편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접수될 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.

## 관 련 법 규

### 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제19조(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)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.

1.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
2.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
3.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9호

사천시 공고 제2023-868호

「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,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 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15일

사 천 시 장

##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「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사천시 인구증가 시책에 따라 수강료 면제 기준에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을 추가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기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수강료 면제 기준 추가(안 제7조제2항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9호

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 여성가족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> 행정정보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 4. 보내실 곳: 사천시장(참조: 여성가족과장)

(우편번호: 52539, 주소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: 831-2145,

FAX: 831-6919)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9호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「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 견	비 고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9호

##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3 - 제 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6. .

제 출 자: 여성가족과장

### 1. 의결주문

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개정이유

「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수강료 면제 기준에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을 추가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수강료 면제 기준 추가(안 제7조제2항)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9호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공보감사담당관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2) 입법예고

가) 기 간: 2023. 6. 15. ~ 2023. 7. 5.(20일 이상)

나) 제출의견: 없음, 건

다) 반영여부: 반영 건, 미반영 건

3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: 반영, 미반영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9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여성회관(이하 “여성회관”이라 한다)”을 “여성회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여성회관”을 “사천시 여성회관(이하 “여성회관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“수탁운영자”란 제13조제1항 단서”를 ““수탁자”란 제13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시장”을 “사천시장(이하“ 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시가”를 “사천시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

6.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(다만,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천시 <u>여성회관(이하 “여성회관”이라 한다)</u>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여성회관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시설”이란 <u>여성회관</u> 내의 교육장, 회의실, 다목적실,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.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6. <u>“수탁운영자”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----- <u>사천시 여성회관(이하 “여성회관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.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“수탁자”란 제13조제1항</u>----- -----.</p>
<p>제4조(사용시간)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<u>시장이</u> 필요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	<p>제4조(사용시간) ----- ----- . ----- <u>사천시장</u> <u>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시가</u>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</p>	<p>제7조(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사천시</u>가 -----</p>

2.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2. (생략)

3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
4. 5. (생략)

<신설>

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

4. 5. (현행과 같음)

6.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 
(다만, 자녀 중 한 명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)

## 관 련 법 규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9호

## 사천시 공고 제2023-869호

「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15일

사 천 시 장

###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사천시 인구증가 시책 및 수강료 면제자 확대를 위해 「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」의 수강료 면제 기준에 다자녀 가정, 차상위계층, 다문화가정을 추가하여 인구증가 및 복지혜택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수강료 면제 기준 추가 및 신설((안)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13조2항)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서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추가
  5.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(다만, 2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)<신설>
  6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<신설>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9호

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·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 여성가족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> 행정정보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 4. 보내실 곳: 사천시장(참조 : 여성가족과장)

(우편번호: 52539, 주소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: 831-2360, FAX: 831-6520)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9호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:

○ 생 년 월 일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 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사용료 등의 감면) &lt;신 설&gt;</p> <p>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관의 <u>사용료 또는 수강료</u>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</u></p> <p>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</p> <p>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</p> <p>4. 5.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3조(사용료 등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관의 <u>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</u> 할 수 있다.</p> <p>1.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: 면제</u></p> <p>2. <u>시의 보조금을 받는 법인·단체: 100분의 50 감경</u></p> <p>② ----- ----- 수 강료----- --.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</p> <p>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3. 4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</p> <p>5. <u>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(다만,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)</u></p> <p>6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</p>

6. (생략)

② 시의 보조금을 받는 법인·단체  
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  
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.

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<삭제>



## 관 련 법 규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